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5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강석주, 김 경,
김규남, 김동욱, 남창진,
도문열, 박강산, 유정인,
이영실, 이원형, 임종국,
정준호, 한 신, 허 훈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,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 근거, 시민 공개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).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청년 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의2(청년 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.</p>